

#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시험 편집요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의 수당지급에 준하도록 규정(안 제2조)
- 나.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다. 시험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15. 4. 6. ~ 4. 27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 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3)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, 원안동의

## 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평창군 시험수당 지급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기준)**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시험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은 해마다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「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조(지급대상)**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·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.

**제4조(지급제외)**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5조(여비)**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: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 지원 근거에 따른 사업비
  -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
  -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급 가능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# 제3조(작성대상) ①~④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등에 지급하는 시험수당 및 여비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210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48조(시험위원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